
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이정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86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3.

발 의 자 : 이정현 · 박홍배 · 이용우
김우영 · 김 현 · 민병덕
이해민 · 윤준병 · 김태년
한민수 · 조인철 · 박선원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인공지능, 센서 등 자율주행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글로벌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대가 열리면서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레벨2(부분 자율주행) · 레벨3(조건부 자율주행) 단계를 넘어 레벨4(고도 자율주행) · 레벨5(완전 자율주행)의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국내 기업들이 실증사업 수행 등 연구 · 개발에 매진하고 있음.

그런데, 완전 자율주행자동차(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의미한다)의 전격 상용화까지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 소요됨에도, 현행법상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(이하 “사업자”)에 대한 실질적 재정지원 및 투자 유인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자들의 자율주행 분야 진출 독려 및 관련 인프라 조성

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그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·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사고 감소, 물류 혁신,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등 국민 생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핵심 미래 산업인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을 지원 및 육성하고자 함(안 제23조의2 신설 등).
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2(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관리·

감독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국민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사업자”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차량·부품 구매 및 개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
2.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따른 안전관리, 유지보수 등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
3. 자율주행 AI 학습센터 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

②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제작·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을 것. 다만, 해당 완전 자율주행자

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안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안전기준을 충족할 것.

2. 운행하려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을 받을 것.

3. 보조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실적 또는 연구개발 실적을 제출할 것.

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

⑤ 보조금의 지급 기준·절차 및 관리·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, 그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.

제54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의2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3조의2(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관리·감독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국민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2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사업자”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u> <u>1.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차량·부품 구매 및 개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</u> <u>2.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따른 안전관리, 유지보수 등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</u> <u>3. 자율주행 AI 학습센터 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</u> <u>②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</u>

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제작·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을 것. 다만, 해당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안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안전기준을 충족할 것.

2. 운행하려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을 받을 것.

3. 보조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실적 또는 연구개발 실적을 제출할 것.

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

제54조(벌칙) ① ~ ③ (생략)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2. (생략) <u><신설></u> ⑤ (생략)	⑤ <u>보조금의 지급 기준·절차 및 관리·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⑥ <u>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, 그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.</u> 제54조(벌칙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<u>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의2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</u> ⑤ (현행과 같음)
--	--